

광주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19가단5401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문수, 임승준

변 론 종 결 2021. 6. 15.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2016. 6. 9.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을 3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E에게 2011. 5. 31.에 3건의 대출을, 2011. 9. 2.에 1건의 대출을 해주었고, C은 소외 은행에게 E의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F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6. 28. 소외 은행으로부터 E, C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이들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5752), 2018. 5. 16.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8. 11. 30. 소외 회사로부터 E, C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4) 한편, E, G이 공유하고 있던 시흥시 H 답 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 C의 자녀인 피고(1989년생)가 2016. 6. 9. 위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91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C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출채무(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6. 6.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351,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J에 대한 위 대출채권(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2019. 11. 20. 기준으로 C에 대하여 131,237,749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3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3. 판단

피고가 C의 자녀이고, 1989년생으로서 2016. 6. 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만 27세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과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의 출처가 C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 출처가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C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1) 원고는 추후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청구를 확장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를 확장하지 않았다.